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위임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4에서 준용하고 있는 지방계약법령 준용 내용을 일부 개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하위 법령을 함께 보완하여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계약법령 준용규정 현행화 (안 제23조의3)

-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6에서 지방계약법령 준용내용이 개정되어 관련 하위법령의 준용내용을 개정
-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42조의2가 삭제됨에 따른 준용규정 삭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2(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제외 사유 등), 제76조의2(청문)가 신설됨에 따른 추가 준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3(준용규정) 영 제57조의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4까지, 제43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 제81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부터 27조까지, 2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6조의2, 제77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본다.

제2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7조의5제4항”을 “영 제57조의7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3(준용규정) 영 제57조의		제23조의3(준용규정) 영 제57조의		
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		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4		의5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2조까지, 제42조의2부터 제42조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의4까지, 제43조부터 제49조까		령」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7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6조부		의3부터 제42조의4까지, 제43조		
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		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		
조의3,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		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78조의2, 제80조부터 제89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		
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		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		71조의3, 제72조부터 제75조까		
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		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		
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		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 제8		
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1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		2,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조,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제9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		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		
터 제22조까지, 제23조의2, 제24		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		
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1조 및 제103조에서 위임한 사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		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그		

<u>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본다.</u>	<u>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부터 27조까지, 2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6조의2, 제77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본다.</u>
제23조의4(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영 제57조의5제4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제23조의4(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영 제57조의7제4항----- ----- ----- -----. 1. ~ 3. (현행과 같음)